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한정애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추가 및 정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배출시설 허가 시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 포함(안 제7조)

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허가를 받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

나.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근거조문 정리(안 제7조, 14조)

법률 개정으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 근거 규정이 법 제17조제4항에서 제1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

다.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조문 정리(안 제16조, 별표 9)

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 근거 규정이 법 제27조제4항에서 제27조제5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

합

라.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 인용조문 정리(안 제12조)

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명칭을 시행령
에 반영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(「악취방지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)

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결정하여야”를 “결정해야”로, “발급하여야”를 “발급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배출시설의 악취 저감 방안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

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별표 제3호”를 “별표 1 제3호”로, “보전하여야”를 “보전해야”로 한다.

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

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
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

제14조제1항 중 “법 제17조제4항”을 “법 제17조제5항”으로, “정하여야”를 “정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발급하여야”를 “발급해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도하여야”를 “지도해야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법 제27조제4항”을 “법 제27조제5항”으로, “정하여야”를 “정해야”로 한다.

별표 6 제2호 근거법조문란 중 “법 제17조제3항”을 “법 제1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 9 제1호라목 중 “법 제17조제4항”을 “법 제17조제5항”으로 한다.

별표 9 제2호자목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34조제5항”을 “법 제34조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타목1)부터 7)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사항란 중 “법 제17조제3항”을 “법 제17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저목 위반사항란 중 “법 제34조제6항”을 “법 제34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에 관한 적용례) 별표 6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

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배출시설의 설치허가)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배출시설의 설치허가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출해야</u> 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「악취방지법 시행규칙」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(「악취방지법」 제8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)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 설></u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결정해야</u> ---- ----- ----- ----- <u>발급해야</u>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배출시설의 악취 저감 방안

제12조(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)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을 말한다. 1. · 2. (생략) 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 제4조제1항, 「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 제4조제1항 및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. ~ 7. (생략) 8. 그 밖에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제3호에 따른	<u>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</u> 제12조(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지역) ----- ----- ----- ----- ---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및 「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----- 별표 1 제3호-----
--	--

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
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
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
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
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
는 지역

제14조(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)

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
17조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
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
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
치 및 기계·시설의 종류 등을
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
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
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
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
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
다.

1. ~ 4. (생략)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
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
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
을 조사·확인하고 해당 시설에
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

----- 보전해야 -----

제14조(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)

① ----- 법 제1
7조제5항-----

----- 정해야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발급해야 -----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도록 <u>지도하여야</u> 한다. ⑤ (생 략) 제16조(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법 제 27조제4항</u>에 따라 재활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·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<u>정하여야</u> 한다. ② (생 략)	--- <u>지도해야</u>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) ① ----- <u>법 제27조제5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</u> <u>해야</u> 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물환경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005